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933 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 172억 14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2.7% 변경

나. 운용규모 : 932억 7백만원(당초계획 대비 172억 14백만원 증가)

○ 수입계획 변경

- 수입계획 : 17,214백만원 증가 (75,993백만원 → 93,207백만원)

※ 전입금 : 17,214백만원 증가 (0 → 17,2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장	관 - 항 - 목	(A)	(B)	(C=B-A)	(D=C/A)
합 계		75,993	93,207	17,214	22.7%
200	세외수입	2,700	2,700	-	-
	210 경상적세외수입	2,700	2,700	-	-
	216 이자수입	2,700	2,700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	2,700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293	73,293	-	-
	710 보전수입등	73,293	73,293	-	-
	714 예치금회수	73,293	73,293	-	-
	714-01 예치금회수	73,293	73,293	-	-
	720 내부거래	-	17,214	17,214	100.0%
	721 전입금	-	17,214	17,214	100.0%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17,214	17,214	100.0%

○ 지출계획 변경

- 지출계획 : 17,214백만원 증가 (75,993백만원 → 93,207백만원)

※ 예치금 : 17,214백만원 증가 (75,993백만원 → 93,2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 성 목		(A)	(B)	(C=B-A)	(D=C/A)
합 계		75,993	93,207	17,214	22.7%
재무활동(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75,993	93,207	17,214	22.7%
	보전지출(하수도사업회전기금)	75,993	93,207	17,214	22.7%
	예치금	75,993	93,207	17,214	22.7%
	602 예치금	75,993	93,207	17,214	22.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 변경(당초 75,993백만원 → 변경 93,207백만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11조제2항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회전기금’)은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투자재원 마련, 물재생센터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대비한 감가상각비 적립 등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39조²⁾,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62, 제정 2020.7.16.)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표 1] 회전기금 조성재원 및 용도

조성재원	기금용도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함)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2)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주요골자

- 회전기금의 '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759억 93백만원이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의회가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당초 운용 규모에서 172억 14백만원이 증가한 932억 7백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임.

[표 2] 회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내역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75,993	93,207	17,214	계	75,993	93,207	17,214
전입금	75,993	93,207	17,214	예치금	75,993	93,207	17,214

-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이 172억 14백만원 순증하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20억 22백만원 중 여유재원 172억 14백만원(18.7%)을 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른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독립채산제³⁾ 및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함에 따라 지난연도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전액에 대해 사업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 따라 당해연도 반드시 지출

3) ※ 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 이 제도는 본질적 조건은 다르지만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공기업(公企業)을 중심으로 그 적용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결손(적자)을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보전하는 일 없이 기업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收支對應)에 의한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의도됨.

이 필요한 사업이 없더라도 굳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등 대규모 재원을 요하는 중장기 사업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유자금을 미리 적립해 놓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을 회전기금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하수도 중장기 투자사업 및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물순환안전국은 하수관로 신설 및 유지관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1조 7,3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현황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 계
<사업비 지출 총 계>	8,518	11,463	12,640	12,992	11,771	12,250	12,772	11,417	11,838	11,678	117,339
하수관로 계	3,875	4,695	4,832	4,786	4,514	4,334	4,174	4,156	4,241	3,464	43,071
투자사업비	2,855	3,851	3,996	3,942	3,661	3,473	3,306	3,280	3,357	2,579	34,300
유지관리비	1,019	843	836	844	852	860	868	876	884	884	8,766
물재생센터 계	4,643	6,768	7,808	8,206	7,257	7,917	8,597	7,261	7,597	8,214	74,268
투자사업비 소계	776	2,107	3,117	3,387	2,307	2,831	3,373	2,022	2,214	2,683	24,817
시설현대화	99	210	228	448	450	1,186	1,272	1,511	1,711	1,790	8,905
총인처리시설	38	21	398	450	419	272	939	0	0	0	2,537
중량·난지 시설물 환경개선	401	1,297	1,581	1,794	922	933	722	0	0	0	7,650
초기우수처리시설	0	0	0	0	0	0	0	110	160	550	820
차집관로 성능개선	23	18	140	140	140	140	140	227	227	227	1,422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34	388	240	80	76	50	40	0	0	0	908
슬러지 처리계통	19	6	0	0	60	100	100	58	0	0	343

효율화 사업											
스마트 하수처리 공정 인프라구축	27	65	40	40	40	40	40	40	40	40	412
청계하수역사체험관	0	0	0	0	0	30	37	0	0	0	67
물재생센터 수전설비사업	0	0	125	105	0	0	0	0	0	0	230
센터 전력 증설	68	42	120	120	0	0	0	0	0	0	350
용역 등 기타	67	55	55	55	55	55	55	55	55	55	562
차량관리 통합영상시스템	0	0	178	144	140	20	20	20	20	20	562
차량관리 단절기간 정비	0	3	8	6	6	6	8	0	0	0	37
우수토실 역류방지시설	0	2	5	6	0	0	0	0	0	0	13
유지관리비 (4개 센터)	3,866	4,155	4,183	4,309	4,438	4,571	4,708	4,722	4,863	5,009	44,824
<회전기금 적립액>	172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72

-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상기 전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은행에 예치하기 위한 예치금이 당초 759억 93백만원에서 932억 7백만원으로 172억원 14백만원이 증액됨.

■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번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회전기금 전출금 172억 14백만원)으로 재무활동경비가 20% (759억 93백만원 → 932억 7백만원, 약 22.7%)를 넘게 되어 금회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임.

- 이처럼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본 회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려는 것은 조례 제2조⁴⁾에 따른 회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회전기금의 적립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현행 시급성을 요하는 하수도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으며,
 - 만일 당장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투자를 위해 금회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예비심사에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72억 14백만원의 예산규모가 수정될 경우 본 변경안 역시 수정이 필요한 사안임.

[붙임] 제7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2024.5.)

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4년 제1차 추경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계획 변경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I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주요 추진사항

- '21. 0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 '21. 10.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2년 본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00억원** 편성 의결
- '22. 07. 제2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2년 추가경정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96억원** 편성 의결
- '22. 09. 제3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3년 본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00억원** 편성 의결

Ⅱ 위원회 심의 사항

□ 안건개요

- 심의안건 : '24년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심의방법 : 서면회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총 9명)

□ '24년 기금변경계획(안) 내용

- 수입계획 : 17,214,413천원 증가 (75,992,860천원 → 93,207,273천원)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17,214,413천원 증가 (0 → 17,214,413천원)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장	관 - 항 - 목	(A)	(B)	(C=B-A)	(D=C/A)
합 계		75,992,860	93,207,273	17,214,413	22.7%
200	세외수입	2,700,000	73,292,860	-	-
	210 경상적세외수입	2,700,000	73,292,860	-	-
	216 이자수입	2,700,000	73,292,860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000	73,292,860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292,860	73,292,860	-	-
	710 보전수입등	73,292,860	73,292,860	-	-
	714 예치금회수	73,292,860	73,292,860	-	-
	714-01 예치금회수	73,292,860	73,292,860	-	-
	720 내부거래	-	17,214,413	17,214,413	100.0%
	721 전입금	-	17,214,413	17,214,413	100.0%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17,214,413	17,214,413	100.0%

- 지출계획 : 17,214,413천원 증가 (75,992,860천원 → 93,207,273천원)
 ※ 예치금 : 17,214,413천원 증가 (75,992,860천원 → 93,207,273천원)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 성 목		(A)	(B)	(C=B-A)	(D=C/A)
합 계		73,292,860	93,207,273	17,214,413	22.7%
재무활동(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73,292,860	93,207,273	17,214,413	22.7%
	보전지출(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92,860	93,207,273	17,214,413	22.7%
	예치금	73,292,860	93,207,273	17,214,413	22.7%
	602 예치금	73,292,860	93,207,273	17,214,413	22.7%

- 변경사유 :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시, '23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172억원을 회전기금 적립 예산으로 편성

III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전체위원 9명 중 7명 심의·의결 ⇒ 의사정족수 충족
 - ※ 단, 서울특별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22.12.30.)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도안위) 소속 시의원 위원 2명은 심의·의결은 회피
- 심의 및 의결 가능위원 7명 전원 원안가결 ⇒ 의결정족수 충족

IV

향후계획

- 민간위원 심사수당 지급 : 금200,000원 (50,000원 × 민간위원 4명)
 - 예산과목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단위사업)기본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 목)일반운영비, 세목)사무관리비
- '24. 6~7. '24년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요청(→재정담당관)
- '24. 7.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회전기금)

-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서명본) 1부.
3. 위원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1부. 끝.